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19 발의연월일: 2024. 9. 30.

발 의 자:이건태·김동아·김한규

박균택 • 박지혜 • 이기헌

이수진 · 임광현 · 조계원

주철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유로 "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, 심리에 관여한 때"를 두고 있으나,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 및 기피 사유로 하고 있지 않음.

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 및 기피 사유로 하는 것은 예단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인데,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과 공범으로 범한 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,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척 및 기피사유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

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경우 등을 제척 및 기피 사유로 추가하여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7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 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 한 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7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7條(除斥의 原因) 法官은 다음	第17條(除斥의 原因)
境遇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	
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의2.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
	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
	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
	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
	나 심리에 관여한 때
8. • 9. (생 략)	8.・9. (현행과 같음)